

2023. 9. 11(월). 10:00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박경원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현수막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정당현수막 게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2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정당현수막 게시 문제점 현황: 덧붙임

다. 남양주시 사고유형별 교통사고(2022년)

라. 국회 입법발의 현황 및 내용(2023년)

마. 입법예고 결과 (23. 8. 30. ~ 9. 4.)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정당 현수막은 2022.12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주요 교차로 등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고 전방 주시 산만으로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허가·신고 규제 폐지 이전에 월 2,138건에서 개정 이후에는 월 3,54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정당현수막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통행안전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 적용에 있어 다소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안전이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교통전문위원 윤 선 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변경신고: 5일
-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당 현수막 게시 문제점 및 민원 현황분석**

□ **정당 현수막 게시 문제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3개월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 8건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브리핑」 (행정안전부, 2023.5.4.)

사고사례 : 현수막에 걸려 넘어짐, 운전자 시야 방해,

현수막이 걸린 가로 등 전도 에 기인한 차량 충돌

□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분석**

(단위: 건)

구분	법 시행 전 (’22.9.~ '22.12.)	법 시행 후 (’22.12.~ '23.3.)	구분	법 시행 전 (’22.9.~ '22.12.)	법 시행 후 (’22.12.~ '23.3.)
계	6,415	14,197	제주	64	138
서울	1,645	1,381	경기	1,299	3,490
부산	511	1,269	경상	156	672
대구	573	985	경상	187	857
인천	499	872	전라	115	719
광주	33	165	전라	183	597
대전	469	997	충청	134	473
울산	213	524	충청	202	451
세종	-	35	강원	132	572

자료 : 행정안전부 >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21.)

**2 정당현수막 게시 상황**

-정당현수막 교차로 및 횡단보도 게시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3 남양주시 불법현수막 설치 현황

#### □ 2022년 불법광고물 정비건수(현장정비 포함)

구분	유동 광고물 소계	현 수 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기타
		소계	공공기관 설치	민간설치				
<b>2022년</b>	218,355	<b>96,958</b>	<b>3,555</b>	<b>93,403</b>	<b>61,870</b>	<b>57,745</b>	<b>767</b>	<b>1,015</b>
1월	14,219	4,355	713	3,642	5,420	3,732	117	595
2월	14,974	4,365	147	4,218	5,866	4,661	33	49
3월	16,634	6,093	311	5,782	4,931	5,564	21	25
4월	19,855	7,403	100	7,303	6,767	5,646	17	22
5월	18,197	7,470	1,074	6,396	4,745	5,947	13	22
6월	17,385	6,937	479	6,458	6,107	4,253	35	53
7월	16,735	6,990	123	6,867	5,343	4,094	287	21
8월	18,273	9,634	125	9,509	4,674	3,904	38	23
9월	23,544	14,006	197	13,809	5,019	4,374	15	130
10월	23,659	13,566	117	13,449	4,895	5,160	29	9
11월	20,895	9,743	84	9,659	4,747	6,338	14	53
12월	13,958	6,396	85	6,311	3,356	4,072	148	13

#### □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건수(현장정비 포함)

구분	유동 광고물 소계	현 수 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기타
		소계	공공기관 설치	민간설치				
<b>2023년</b>	115,857	<b>53,919</b>	<b>784</b>	<b>53,135</b>	<b>22,957</b>	<b>36,826</b>	<b>172</b>	<b>1,983</b>
1월	16,231	8,654	82	8,572	2,484	4,893	33	167
2월	19,138	9,473	138	9,335	4,064	5,421	27	153
3월	20,956	9,189	105	9,084	5,775	5,874	20	98
4월	16,239	7,310	26	7,284	4,614	4,216	38	61
5월	24,916	10,578	318	10,260	3,492	9,317	38	1,491
6월	18,377	8,715	115	8,600	2,528	7,105	16	13

자료 : 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교통안전지수분석 (남양주시)

□ 남양주시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단위:건,명,%)													
구분	사고건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부상자수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남양주시	경기			전국	남양주시			경기	전국	남양주시	경기	전국
합계	1,970	100.0	100.0	100.0	24	100.0	100.0	100.0	2,927	100.0	100.0	100.0			
차대사람	소계	409	20.8	16.7	18.9	9	37.5	33.1	32.9	427	14.6	11.8	13.6		
	횡단중	179	9.1	5.7	6.7	6	25.0	16.3	15.8	182	6.2	4.1	4.8		
	차도통행중	46	2.3	1.9	2.2	0	0.0	4.9	5.4	47	1.6	1.3	1.6		
	김가장자리구역통	11	0.6	0.7	1.1	0	0.0	1.6	1.5	12	0.4	0.5	0.8		
	보도통행중	28	1.4	1.2	1.3	0	0.0	1.1	0.9	32	1.1	0.9	1.0		
	기타	145	7.4	7.1	7.6	3	12.5	9.1	9.4	154	5.3	5.0	5.5		
차대차	소계	1,498	76.0	79.6	77.1	7	29.2	46.4	42.8	2,427	82.9	85.4	83.3		
	정면충돌	101	5.1	3.9	3.9	1	4.2	4.9	6.9	182	6.2	4.5	4.6		
	측면충돌	599	30.4	30.4	33.1	2	8.3	13.3	14.5	958	32.7	31.6	34.9		
	추돌	362	18.4	16.7	15.9	4	16.7	15.7	12.0	645	22.0	20.7	19.6		
	기타	386	19.6	26.8	22.3	0	0.0	12.1	9.2	573	19.6	26.9	22.5		
	후진중충돌	50	2.5	1.9	1.8	0	0.0	0.4	0.2	69	2.4	1.7	1.7		
차량단독	소계	63	3.2	3.6	4.0	8	33.3	20.5	24.1	73	2.5	2.7	3.1		
	공작물충돌	33	1.7	1.1	1.4	4	16.7	10.2	11.8	41	1.4	0.9	1.1		
	주/정차차량 충돌	0	0.0	0.0	0.0	0	0.0	0.2	0.1	0	0.0	0.0	0.0		
	도로이탈 추락	2	0.1	0.1	0.2	2	8.3	1.8	3.0	2	0.1	0.1	0.1		
	도로이탈 기타	0	0.0	0.0	0.1	0	0.0	0.0	0.7	0	0.0	0.0	0.1		
	기타	23	1.2	2.0	1.8	1	4.2	4.9	4.9	26	0.9	1.4	1.3		
	전도	5	0.3	0.4	0.5	1	4.2	2.6	3.0	4	0.1	0.3	0.4		
	전복	0	0.0	0.0	0.1	0	0.0	0.7	0.6	0	0.0	0.0	0.1		
철길건널목	소계	0	0.0	0.0	0.0	0	0.0	0.0	0.1	0	0.0	0.0	0.0		
	철길건널목	0	0.0	0.0	0.0	0	0.0	0.0	0.1	0	0.0	0.0	0.0		

**[21214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일 2023. 4. 18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36	2023-04-18	이만희의원 등 12인	제 2 1 대 (2020~2024) 제 405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 시 지자체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9				

**[2122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일 2023. 5. 22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2199	2023-05-22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 2 1 대 (2020~2024) 제 406 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2023. 1. 17.)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의정활동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명시하고,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및 제261조제8항).

###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3				

### [212309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일 2023. 7. 5

###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3099	2023-07-05	박대수의원 등 10인	제 21대 (2020~2024) 제 407 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가 옥외광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센터는 국가승인통계인 「옥외광고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 및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 광고물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관련 정보 수집·공유·활용 사업의 내용에 정당 광고물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7-06				